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5, pp.167-213  
<https://doi.org/10.29212/mh.2020..115.1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미국해군제독 슈펠트와 조미수교(朝美修交)

—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심으로(1880-1882)

최덕규\*

1. 서론
2. 슈펠트의 태평양 해양제국 구상과 고종의 防俄聯美策
3. 한반도 4강체제의 형성과 美·淸 접근
4. 슈펠트-이홍장의 조미수교 교섭과 “중국인 배척법”
5. 결론

## 1. 서론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의 핵심 쟁점은 제1조에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밝히는 이른바 “속방조관(屬邦條款)”의 삽입 여부였다. 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미수교의 전권을 부여받은 미국측 대표 슈펠트(R.W.Shufeldt) 제독은 “속방조관”은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체결 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명시하고자 한 청(淸)측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따라서 조미조약은 조선이 정치적으로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국제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특정국에게 독점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통용되는 시장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슈펠트는 미국의 변영은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확대에 달려있다는 그의 신념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슈펠트 제독은 멀리 떨어진 미수교국과 외교관계 수립의 임무를 수행한 군인외교관이었다. 미국해군사에서 이같은 임무를 수행한 마지막 제독이 슈펠트였다.<sup>1)</sup> 그는 일본을 개국시킨 페리(M.C.Perry) 제독과 같이 19세기 미국의 해외팽창의 선봉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던 해군장교였다. 이는 그가 일반 외교관과는 달리 무력과 설득이라는 외교협상의 양대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슈펠트는 한편으로 이홍장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를 강력하게 몰아세울 압박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조미수교를 성사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조미수교를 위한 슈펠트와의 교섭과정에서 이홍장(李鴻章)이 결국 “속방조관”을 철회한 것은 防俄聯美策을 반드시 성사시키려 했던 절박함의 산물이었다. 이홍장은 1880년 12월 조미조약에 조선은 “중국의 명을 받들어 結約”한다고 성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駐日淸國公使 하여장(何如璋)의 건의(1880.11.18.)에 대해 거부의를 표명한바 있었다. 속국(屬國)의 명문화는 조선 국왕이 스스로 그런 요청을 해올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2)</sup> 그럼에도 이홍장이

1) Charles O. Paullin, *Diplomatic Negotiations of American Naval Officers 1778-1883*, The Johns Hopkins Press, 1912. pp.7-10.

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김형중 외 역, 동북아역사재단, 2016. pp.109-114.

조미수교를 위한 슈펠트와의 교섭이 시작되었던 1882년 봄(1882.3.25.~4.18.) “속방조관” 카드를 다시 꺼내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홍장의 “속방조관” 카드는 “恐露症(Russophobia)”의 재현과 관련 있다고 본다. 1880년伊犁위기 당시 對淸 해상압박 작전을 위해 극동으로 파견된 전직 海軍相 레습스키(С.С.Львовский) 제독은 연합함대를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해있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비준(1881.5.15.)을 기다린 후, 일본을 방문하여 천황을 알현(1881.6.15.)하고 러·일 우호를 과시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러시아 해군성이 차르의 칙령에 따라 해군전략 수립을 위해 개최한 특별회의(1881.9.3.)에서 태평양에서의 해군력증강과 블라디보스토크의 방비를 강화가 결의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러·청 전쟁위기 해소 이후 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유일한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러시아로 연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188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것도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의 결과였다.<sup>3)</sup>

슈펠트 제독이 “속방조관”이란 미국을 청국과 더불어 조선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국가(joint protectors of Korea)로 포섭하려는 이홍장의 계획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4)</sup> 이홍장은 러시아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계기로 러·청 전쟁위기를 겪으면서 향후 러일 共助에 맞선 자구책의 일환으로 美淸 방위협력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러·청간의 전쟁위기와 맞물린 5개국

李鴻章-總理衙門(1880.12.23.)

3) Р.В.Кондрешко, Моряки Прилики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в. СПб 2006, pp. 58; 75-78.

4)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A Biography of Rear Admiral Robert Wilson Shufeldt, US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pp.290-291.

(朝美淸露日) 세력관계가 조미수교에 투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조미수교는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왜냐하면 조미수교가 조선, 미국, 청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가 등장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4강(美淸露日)구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이후 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러시아 요인과 미국의 슈펠트 제독이 아프리카·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순항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조선에 당도(1880.5.4.)함으로써 나타난 미국 요인은 향후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1880년을 기점으로 한국근대사는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4대 열강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외연과 연동되는 구조가 성립되었다.

조미수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1910년에 발표된 파울린(Charles O. Paullin)의 논문 “슈펠트 제독의 조선 개항”<sup>5)</sup>을 기점으로 미국<sup>6)</sup>과 중국자료<sup>7)</sup>를 중심으로

5) C.O. Paul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25, No.3, 1910. pp.479-499.

6) 조미수교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는 활용한 사료의 특징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1960년대 초반 미국국립문서서관(The U.S. National Archives) 소장 슈펠트제독의 순항일지(Commodore R.W. Shufeldt: Cruise of the Ticonderoga, 1878-1880) 자료와 미국의회도서관 소장 슈펠트 문서(Shufeldt Papers)를 활용한 연구들이다. 이 자료들은 조미수교를 둘러싼 슈펠트 제독의 활동들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요연구로는 李善珩, 「Shufeldt 提督과 1880年의 朝美交涉」, 『歷史學報』 15, 1961. pp.61-91. 이보형 교수는 文一平의 『對米關係五十年史』(조선일보사편집부: 1939)가 Paullin의 논문에 주로 의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신의 논문의 인용사료는 “The U.S. National Archives, Commodore R.W.Shufeldt : Cruise of the Ticonderoga, 1878-1880”라고 소개했다; 韓祐勳, 「Shufeldt 提督의 韓·美修好條約 交渉推進緣由에 대하여」, 『震檀學報』 24권, 1963. pp. 419-438. 한우근 교수가 소개한 논문의 인용문서는 미국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의 슈펠트 문서였다. 그럼에도 이보형의 연구는 1880년 일본의 알선으로 추진된 슈펠트제독의 조미교섭이 실패한 이유를 고찰하였고, 한우근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개별사실에 대한 각론은 정립된 듯하다. 그럼에도 청정부가伊犁분쟁으로 촉발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음에도 왜 결국 러시아와 타협하게 되었는지, 이홍장은 1880년 주일청국공사 何如璋이 건의한 “속방조관”을 거부한 바 있었음에도 왜 1882년 봄 이를 번복하여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했는지, 슈펠트 제독은 美日和親條約(1854)에는 없는 ‘居中調整(good offices)’ 조문을 조미조약 제1조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

의 연구 역시 미국이 조미조약 체결에 노력한 배경과 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조미 양국 관계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7) 1972년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간행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勸導朝鮮與各國立約通商” 문서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淸末 외교관계 문서 가운데 조선관련 사료들을 선별하여 편찬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은 연미론(聯美論)을 둘러싼 조정관계사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의 미국 문서관 소장 자료의 발굴과 1970년대 대만 근대사연구소 檔案館 자료들이 출판됨에 따라 한국·미국·중국의 자료들을 활용한 업적들이 산출되기 시작했다.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의 朝鮮艦에 대한 연구조사(1965-67)는 권석봉(權錫奉)에 의해 한국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권석봉, 「중국 중앙연구원 소장 조선당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 『동양사학연구』 2, 1967. pp.43-74.; 아울러 1972년 간행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조미조약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번역 발간한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2016,」을 참조할 수 있다. 주요 연구업적은 다음과 같다. 권錫奉, 「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 『역사학보』 21, 1963.; 宋炳基, 「19세기말의 聯美論 序說-李鴻章의 密函을 중심으로」, 『史學志』 9권, 1975.; 宋炳基, 「金允植李鴻章의 保定天津會談(上:下) -朝美條約 締結(1882)을 위한 朝淸交涉」, 『동방학지』 44-45권, 1984.; 김원모,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交涉始末」, 『國史館論叢』 第44輯, 1993. 주요업적들을 정리해보면, 권석봉은 이홍장의 列國立約勸導策이 聯美策의 기초가 되었다고 분석하였고, 송병기는 기존연구가 미국측 자료에 의존했음을 지적하고 한국 및 중국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미수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조정간의 교섭을 천착하였다. 김원모는 韓中美의 자료를 섭렵하여 종래의 조미, 조정 양국관계에 국한되었던 주제를 종합적으로 살필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조미수교에 대한 연구사에서 러시아 자료가 인용되지 않았던 점은 기존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조미수교는 “防俄聯美論”을 국제조약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연미론과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 당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 대한 고찰은 소홀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시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슈펠트 제독이 미국을 태평양의 해양제국으로 부상시키고자 하였던 논리와 의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고종정부가 쇠락해가는 청제국을 목도하면서 조선의 안정보장책의 일환으로 대미접근 정책을 추진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일본이 아니라 청국이 조미수교를 주선하게 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의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과 관련하여 청국이 조선에 聯美論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이홍장이 1880년 하여장이 건의한 “속방조관”을 거부했음에도 1882년 봄 조미수교를 위한 협상에서 “속방조관”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188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슈펠트 제독이 이홍장과 조미수교 협상을 전개하는 동안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은 조미수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슈펠트가 이홍장과의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는 러시아의 문서관에서 찾은 관련 사료들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sup>8)</sup>

8) 러시아해군함대문서관 해군성관방국 문서(РГАВМФ. Ф410. Канцелярия Мор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가 그에 해당한다.

## 2. 슈펠트의 태평양의 해양제국 구상과 고종의 防俄 聯美策

조미수교는 미국을 태평양의 해양제국으로 부상시키려는 슈펠트<sup>9)</sup> 제독의 구상과 연미론(聯美論)을 근대 조선의 안전보장책으로 삼고자 했던 고종의 대미접근 정책이 맞물린 산물이다. 슈펠트는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국가의 번영은 해외통상 확대가 관건이라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미국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열강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에 미국의 미래를 걸고 있었다. 반면 고종정부는 일본의 琉球병합(1879) 선례에서 보았듯이, 무기력한 청국보다는 서양강국이 조선의 안전을 보장해주길 바랐다. 이는 서양공법에 의존하여 자주독립을 유지하는 책략은 비현실적인 것임을 인식한 결과였다. 따라서 청국이 조선에 권고했던 聯美策을 계기로 고종은 근대조선의 안보체계에 미국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9) 슈펠트(1822-1895)는 뉴욕주 레드후크(Red Hook, Dutchess county)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45년 7월 해군장교에 임관 후, 증기우편선 애틀란틱(Atlantic)과 조지아(Georgia)호의 일등항해사로 근무했다. 1854년 해군 퇴역 후, 미국 상선대에 입대, 뉴욕-리버풀, 뉴욕-뉴올리안즈를 왕복하는 상선의 선장으로 활약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링컨대통령은 슈펠트를 쿠바의 아바나(Havana) 주재 미국 총영사에 임명함으로써 외교계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남북전쟁 중반 무렵인 1863년 슈펠트는 다시 해군에 입대, 연방 해군의 함장으로서 남부 무렵군(Confederate forces)의 해군과 여러 차례 해전을 벌여 승리로 이끌었다. 남북전쟁 직후 아시아 함대에 배속된 그는 1866년 9월 5일 와추셋(Wachusett)號 艦長에 임명되어 해적의 약탈로부터 미국의 통상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Paul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477;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A Biography of Rear Admiral Robert Wilson Shufeldt, US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pp.4-13.

미국은 조미수교 조건으로 조선을 특권과 독점이 허용되지 않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실천되는 교역시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는 슈펠트가 조선을 아시아통상의 교두보로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전통적 속방관계를 유지하여 조선을 독점하고자 한 청국과 조선에 自主國의 지위를 부여했던 미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조미수교의 양대 주역인 미국해군의 슈펠트 제독과 조선국왕 고종의 세계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877년 슈펠트 제독이 워싱턴 소재 “미국식민협회(American Colonization Society)”에서 행한 연설 “미국 해군과 라이베리아 공화국의 건국, 발전, 번영<sup>10)</sup>은 ”문명의 힘은 화약에서 나온다“는 그의 문명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슈펠트가 아프리카 함대(1843-1844)를 지휘하며 라이베리아 해안을 순항했던 페리(M.C.Perry) 제독의 문명관을 계승했음을 의미했다. 이 연설에서 슈펠트가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페리제독을 꼽았던 이유도 후자가 토착민들에게 필요시 화약으로써 문명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페리 제독이 함포외교로 일본을 최초로 개국시켰던 선례 역시 슈펠트의 조미수교 임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슈펠트가 1878년 미국식민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것은 그가 인종주의자였음을 보여준다. 미국식민협회는 미국내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흑인들의 아프리카 재이주를 목적으로 설립(1817)되었다. 이 협회의 사상적 기반은 사회진화론적 인종론에 있었다. 각 인종들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황인종이 아시아에서, 백인이 유럽에서 번영하듯이 흑인들도 그들에게 할당된 영

10) LC, African American Pamphlet Collection, "The American Navy and Liberia : an address before the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 January 18, 1876."

역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sup>11)</sup> 따라서 그의 인종주의적 문명관은 조미수교를 위해 이홍장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화이론(華夷論)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서구의 국제법의 기준에서 조선의 지위를 결정짓고자 한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슈펠트가 미국의 인종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에 건국된 라이베리아(Liberia) 공화국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곳이 아프리카 무역시장의 확대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아프리카로 귀환한 미국 흑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신대륙을 개척하여 수립할 새로운 국가는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로서 거대한 상품시장으로 성장해 나가야 했다. 따라서 슈펠트의 연설에서 신생 라이베리아가 “유럽열강에 흡수되거나 야만부족들에 의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한 것은 라이베리아의 건국과 발전에 있어서 미국 해군장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sup>12)</sup>

슈펠트는 미국해군이 라이베리아를 보호해야 할 또 다른 이유로 기독교 선교를 꼽았다. 그는 이곳으로 이주한 미국 흑인들이 아프리카 중심부에 기독교를 선교하는 선봉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역할을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가 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슈펠트는 아프리카 전역을 비추는 라이베리아의 등대가 수도 몬로비아(Monrovia)에 정박한 미국 군함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조로 양국 관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에 이슬람교를 믿는 아프리카 토착부족들과 투쟁하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최선의 동맹자는 미국해군이었다. 따라서 슈펠트에게 해외통상, 기독교의 선교, 그리고 해군력은 삼위일체(三

11) LC. “The U. S. Navy in connection with the Foundation, Growth and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Liberia.” 1877. p.18.

12) 위의 문서. p.27.

位一體)이기도 하였다.

슈펠트가 소형군함을 활용하여 미국과 라이베리아를 직접 연결하는 우편연락선 개설을 제안한 것은 미국의 대외무역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군이 담당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영국의 해외 우편시스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어 이후 민간회사가 이를 넘겨받아 세계적인 우편망을 구축한 선례에 주목한 결과였다. 이에 군함이 먼저 항로를 개척하고 상선이 뒤를 따르는 방식으로 라이베리아를 미국의 통상시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슈펠트가 해군성 장비모병국장(Chief of the Bureau of Equipment & Recruiting)에서 물러난 것(1878.11.1.)도 군함과 상선을 “공동의 사도(Joint Apostles)”로 앞세워 기독교 교리를 아프리카에 전파하고 라이베리아를 통상의 거점으로 확보한다는 그의 원대한 구상과 무관하지 않았다.<sup>13)</sup>

슈펠트의 구상은 그가 미국의 통상시장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아시아 순항함 지휘관으로 임명됨으로써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해군장관(R.W.Thompson)과 국무장관(Maxwell Evarts)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슈펠트에게 전달한 훈령(1878.10.29.)의 요지는 남북전쟁 이후 침체를 겪고 있던 미국경제의 부흥을 위한 활로 모색에 있었다. 이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핵심인바, 미국이 유럽열강과 더불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 쟁탈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후발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발제국주의 국가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슈펠트가 라이베리아를 아프리카 통상확대의 거점으로 간주하였다면,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주목한 국가는 조선이었다. 조선은

13) 위의 문서. p.26.

한편으로 아직 서구열강에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세력권 분할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이며, 다른 한편으로 조선에 대한 접근성은 지리적으로 유럽보다 미국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버지니아의 케이프헨리(Cape Henry)를 출발(1878.12.7.)한 슈펠트의 순항 일정에서 최초 도착지가 라이베리아였다면, 조선이 그 종착지로 상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슈펠트의 아프리카·아시아 순항여정에서 그 대미를 장식할 사건은 조미수교였다. 이는 그의 아프리카·아시아 원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 미국정부에 대한 보답일수도 있었다. “페리가 일본을 개국시켰듯이 조선인들도 개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슈펠트를 격려하였던 미국 상원의 해사위원회 의장이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사젠트(A.A.Sargent) 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에바츠 역시 수교의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었다. 근거는 첫째, 신미양요(辛未洋擾)를 이끌었던 조선의 집권세력이 물러나 신정부가 등장하였고 둘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의 주선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sup>14)</sup>

미국이 일본의 주선을 통해 조미수교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朝日修好條規를 보완하기 위해 6개월 뒤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1876.8.24.)의 제10조였다. 제10조의 요지는 조선의 연해지방에 표류해오는 외국선원의 본국 송환 사무는 각 항구의 일본국 관리관의 소관으로 규정한 것이었다.<sup>15)</sup> 이는 조선과 서구 열강간의 접촉 창구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종래 朝淸간에 존재했던 외국인 처리 업무가 일본에 이관되었음을 의미했다.

14)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176-181.

15) 高宗實錄 13年 7月 6日.

슈펠트가 해군장관으로부터 출항명령(1878.10.29.)을 받은 뒤, 국무장관 에바츠가 해군장관 톰슨에게 보낸 편지(1878.11.9.)가 추가로 슈펠트에게 전달되었다. 에바츠는 일본과 통상조약 개정(1878.7.25.) 작업을<sup>16)</sup> 진행하면서 조선해안의 외국인 표류선원 송환업무가 일본으로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조선이 조일수호조규와 유사한 조약체결 의지가 있는지 슈펠트가 이를 조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해군장관 톰슨이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號의 순항 일정에 한반도를 포함시킬 것을 슈펠트에게 훈령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17)</sup>

슈펠트가 미국의 경제침체를 타개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조선을 최종목적지로 삼은 순항여정에 올랐을 때, 조선의 신정부는 개방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에 봉착해 있었다. 딜레마의 요체는 문서상 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현실정치에서의 그것이 相符合하지 않는데 있었다. 고종정부는 조일수교를 통하여 自主國의 지위로 국제통상조약 체제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안전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는 현실과 문서상의 자주독립국가라는 모순은 고종시대사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어(key word)가 되었다.

북경주재 미국공사 사무엘 윌리엄스(S.Williams)가 국무장관 피쉬(Hamilton Fish)에게 올린 보고서(1874.3.30.)에는 1873년 말

16) *Treaties and Conventions Concluded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Powers Since July 4, 177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89, pp.1351-1352. 1878년의 개정된 미일통상조약에서 미국은 관세와 통상규정 제정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조약은 일본이 다른 모든 열강과 이와 유사한 협약 혹은 조약 개정을 이를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다른 모든 조약국가들과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1889)에는 작동되지 못했다.

17) Tyler Dennett, *Americans in Eastern Asia*. pp.455-456.

에 발생한 조선의 정국 변화를 계기로 고종이 새로운 집권세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고종이 외국인과 기독교에 호의적인 개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sup>18)</sup> 윌리엄스의 전망은 최근 북경에 도착한 만주와 한국 접경지역 교구를 관할하는 로마가톨릭 주교(Monsignor R.)의 전언에 근거하고 있었다. 전언의 요지는 신미양요가 조선 정국에서 기득권 세력인 쇄국론자들이 쇄퇴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신미양요와 쇄국론자들의 쇄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 미군의 공격으로 재앙적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성보 전투(Fort McKee)”가 조선정계에 남긴 교훈은 다음과 같았다. 무기와 전술이 월등한 서구 강대국 앞에서 衛正斥邪를 명분으로 한 수구파의 저항은 무의미함을 입증했다는 것이었다. 유교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위정척사의 쇄국정책이 국가의 안전과 부강의 원천임을 입증해야 했었다. 그러나 미군의 가공할 군사력은 東道西器論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노정시킴으로써 조선정부 지배층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한 대세가 되도록 만들었다. 윌리엄스가 고종의 친정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없었다고 보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고종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대외개방 정책을 이끌어야 했다.

신정부 등장의 당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논거는 신미양요를 과연 조선의 승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기득권 세력의 이슈(Issue)에 대한 해석권이 도전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윌리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 호” 사건에 따른 미국해군의 탐문항행과 신미양요는 대원군에 의해 조선을 외국의 정복에서 구원한 대승리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18) S. Wells Williams - Hamilton Fish, 30 march 1874. FRUS. 1874, pp.253-254.

대원군 일파가 신미양요 직후 서울과 전국의 도회지에 세운 척화비(斥和碑)가 그 대표적 사례였다.<sup>19)</sup>

척화비의 용도는 배외정책의 정당성을 포장하여 사실을 왜곡하는데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대원군 일파는 국론을 斥邪와 주화(主和)파로 양분시켜 후자에 賣國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이를 사상통제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합포외교에 굴복하여 입약(立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미국의 정복으로부터 구해냈다는 척사론자들의 궤변과 사상통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었다. 윌리엄스가 조선 지배층 가운데 합리적 일파(the more sensible part of rulers)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보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20)</sup> 따라서 친정에 나선 고종에게 서양은 더 이상 척사파들에 의한 “만들어낸 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부국강병을 위한 탐구의 대상이자 교역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고종정부가 펼치게 될 대외개방정책은 조선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했다. 안전보장의 방책은 미비했다. 고종정부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는 안전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화와 국제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홍장이 조선에 서구열강과의 입약(立約)안을 제시했던 배경에는 국제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유럽의 소국인 벨기에가 국제법에 근거하여 중립국으로서 독립을 유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sup>21)</sup> 그렇다면 과연 국제법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증하는 진리일 수 있을까?

그러나 고종정부는 서양공법 체제가 과연 조선의 자주독립을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심했다. 이는 서양공

19) 高宗實錄, 高宗8年 4月 25日.

20) S. Wells Williams - Hamilton Fish, pp.253-254.

21) 李鴻章-李裕元, 己卯年 7월 9일,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pp.37-41.

법이 일본의 침략성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했다. 이홍장이 고종정부에 서구열강과 立約을 제의했던 논거는 한반도를 一國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열강의 균점(均霑)화였다. 그러나 고종정부는 서양공법이 단지 서구열강에 적합한 국제관계의 규범일 뿐,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규범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sup>22)</sup>

고종정부는 일본의 호전성을 어떠한 국제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음을 체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한제국이 폐멸될 때까지 해법을 찾지 못했다. 비록 이홍장이 벨기에(Belgium)와 불가리아(Bulgaria)의 사례를 들어 국제법을 통해 약소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요컨대 국제법 체제는 강제력이 不在하다는 허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들을 제재하고 징벌하는 방식을 찾고 제도화하기까지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제법을 정교하게 다듬어도 이를 위반하는 국가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국제법에 의존하여 독립을 유지하는 방식 또한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고종정부가 서양공법을 통해 일본의 호전성을 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는 일본의 유구(琉球) 병탄(1879)이었다. 이홍장은 1879년 7월 9일 조선 原任太師 이유원(李裕元)에 보낸 편지에서 일본의 모략으로 조선이 위태로운 형세가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서구열강과 수교를 통해 일본을 제압한다는 해법이었다. 일본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은 서양이며 서양 통례에는 지금까지 까닭 없이 다른 나라를 빼앗고 멸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벨기에와 같은 유럽의 아주 작은

22) 李裕元-李鴻章. 己卯年 11월 12일.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p.59-63.

나라도 스스로 각국과 조약을 맺은 다음, 아무도 감히 함부로 침략하는 경우가 없었던 사례를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23)</sup> 따라서 이러한 국제법 사례는 강국과 약소국이 서로를 보장해준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선의 개항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홍장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유원은 과연 서양 공법(公法)이 사납고 교활한 일본이 득세한 동양에 적용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양의 공법이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빼앗고 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러시아가 강하지만 터키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했음에도, 일본이 유구(琉球)의 왕을 폐하고 영토를 병탄”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sup>24)</sup> 더욱이 “조선이 무고한데 흑시라도 병탄의 毒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 나라가 함께 막아주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종은 일본의 유구 병탄을 현실정치의 시각에서 해석했다. 국왕은 이 사태의 본질이 청국의 유약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sup>25)</sup> 고종이 동지정사(冬至正使) 한경원(韓敬源)에게 “유구국왕(琉球國王)이倭에게 잡혀서 이홍장(李鴻章)과 예부(禮部)에 구원을 청한 일까지 있었으나, 끝내 구원하지 못한 사실을 상세히 탐지”할 것을 지시(1879.12.8.)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sup>26)</sup> 벨기에와 덴마크는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어도 강대국·약소국의 상호균형에 의지하여 왔지만, 琉球王은 수백 년의 오래된 나라인데도 유지되

23)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p.38-39.

24) 「조선 原任太師 李裕元이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보낸 서신」, 1880년 3월 19일,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61.

25)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p.41-42. 이홍장은 미국 전임 대통령 그랜트(Ulysses Simpson Grant)에게 류큐(琉球)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류큐가 중국의 屬邦이 된지 이미 100여년이 지났고 관련 문서들도 모두 남아있음에도, 일본이 류큐를 폐멸하면서 중국에 알리지도 않았으며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를 날조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26) 『承政院日記』 高宗 16年 11月 7日.

지 못하였던 사실은 공법을 통한 대일 견제(牽制)가 역부족임을 반증하는 사례였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시기 약소국의 중립화는 현실적으로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후견하는 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했다. 벨기에의 중립은 공법보다는 영국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고자 한다면, 이를 지탱해줄 수 있는 강대국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홍장의 정책은 중립의 본질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것에 불과했다.

고종은 유구병합 과정에서 청정부가 보여준 무기력과 이홍장의 입약 권고안이 일본의 호전성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방비책은 무엇인가?<sup>27)</sup> 그것이 바로 고종이 미국에 주목한 이유다. 미국은 후발제국주의 국가로서 유럽열강에 의해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원했던 반면, 조선은 쇠락하는 청국을 대신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미수교는 현실적으로 슈펠트와 고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다. 다만 斥邪운동으로 표출된 조선 내부의 반발<sup>28)</sup>과 조선을 “동삼성의 병풍(東三省屏蔽)”<sup>29)</sup> 혹은 “왼팔(左臂)”로 간주하고 있던 청국의 간섭이 걸림돌이었다. 척사운동은 고종의 가혹한 탄압

27) 고종의 방아책과 관련하여 1880년 국왕의 명을 받고 장박(張博)이 현지사정을 살피기 위해 연해주에 파견되었다. 이후 연해주에 파견되어 국왕에게 올린 정세보고서가 이어졌는데 1882년 12월 백춘배(白春培)의 ‘아라사채탐사백춘배서계(俄羅斯探使白春倍書啓)’가 대표적이다. 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러시아 레습스키함대의 극동원정을 중심으로」, 『군사 108호, 2018. pp.272-273.

28) 反外勢的, 反開化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庚辰, 辛巳年間(1880-1881)의 척사운동, 이른바 辛巳斥邪運動에 대해서도 다음 연구를 참조. 송병기, 「辛巳斥邪運動研究」, 『사학연구』, 제37호, 1983.

29)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p.40.

을 받고 진정되었으나 청국의 간섭을 제어하는 임무는 국왕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따라서 조미수교에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임무는 슈펠트의 몫이 되었다.

### 3. 한반도 4강구도의 형성과 美·淸 접근

1880년 봄의 한반도는 이전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청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슈펠트 제독과 러시아의 레슈스키 제독이 한반도 주변에 모여들어서 조선을 둘러싼 4강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개국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은 일본보다 청국이 조미수교에 적극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해군상 레슈스키 제독이 23척의 대규모 원정함대를 구성하여 극동에 출현한 것은 청국 신장(新疆) 지역의 일리(伊犁)지방을 둘러싼 러청간의 전쟁위기와 관련이 깊다.<sup>30)</sup> 함대의 파견은 러청 육상국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러시아 육군을 투입하여 청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레슈스키 제독이 해군상(海相)을 사임(1880.6.30.)하고 동아시아로 급파되어 러시아 원정함대의 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대중국 해상 압박 작전을 지휘하기 위함이었다. 러시아 함대의 對淸 해상압박은 육군과의 공동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경(北京)공약을 위한 상륙작전

30)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140-141.伊犁문제로 촉발된 러청전쟁 위기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레슈스키 제독이 지휘하는 연합함대의 극동원정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러시아 레슈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중심으로」, 『군사』, 108호, 2018.

이 그 대미를 이룰 것이었다.<sup>31)</sup> 이에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함락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차르정부가 극동원정 함대 사령관 레습스키 제독에게 부여한 최우선의 임무는 함대의 기지이자 거점이 될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정비와 연해주 해안방위였다. 이와 더불어 청국함대를 공격하고 항구를 점령할 수 있는 전권이 위임되었으나, 청국 항구의 봉쇄작전은 중립국(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대중국 교역상의 이해를 고려하여 외국함대 사령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 전개하도록 훈령이 내려졌다.<sup>32)</sup>

레습스키는 일본 및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 훈령을 받고 있었다. 대일 관계와 관련, 러일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對淸 개전 시, 일본의 우호적 중립을 기대하고 있었다. 차르정부가 러청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립국 일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훈령을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조선의 경우, 러청 개전시 청국 편을 들어 러시아와 전쟁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되, 조선의 중립과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훈령했다.<sup>33)</sup>

그럼에도 차르정부의 훈령(1880.7.17.) 가운데 유사시 조선의 항구를 점령할 수 있는 전권이 레습스키 사령관에게 부여되었던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훈령에 따르면, “러청 양국과 접경한 조선은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함대의 필요에 따라 조선의 항구들을 이용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의 사항이 요구되었다. 첫째, 조선의 항구

31)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332-333.

32)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275: Указания, которыми должен руководиться Главный Начальник наших морских сил в Тихом Океане.

33) 위의 문서.

를 점령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조선인들의 증오를 야기할만한 일체의 행동을 회피해야 하며. 둘째, 만약 레쉴스키 제독이 어떤 형태로든 조선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반드시 일본정부의 동의하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과 수교하려는 유럽열강과 미국의 뒤를 질투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sup>34)</sup>

러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러시아함대의 극동 원정이 현실화되자 슈펠트 제독의 조미수교 임무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연동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중립정책을 펼쳤고 러시아함대의 원정작전에 필요한 군수 조달 및 일본의 항구에서 越冬을 허가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이는 일본의 유구(琉球)병합(1879)을 둘러싼 청일간의 관계악화의 산물이기도 했다. 러시아가 청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러일 공조를 강화한 것도 청일간의 대립관계를 이용한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에 맞서 싸울 청국은 지지 세력이 이탈하고 있었다. 가장 큰 타격은 러시아의 적성국이자 청국의 강력한 후견세력이었던 영국이 대러 견제 전선에 불참한 것이었다. 영국의 불참은 1880년 4월 선거를 통해 수립된 자유당 정부인 글래드스톤(William E. Gladstone)내각이 러청전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종식된다면, 북경을 점령한 러시아에 의해 중국내 영국의 지위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었다.<sup>35)</sup>

34) ПЛАНЪМЪ Ф.410. Ст. 2 Д 4071. Л 278-279: Указанія, которыми должен руководиться Главный Начальник наших морских силъ в Тихом Океанѣ. 5 июля 1880 г.

35) Immanuel Hsu.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p.14.

청국은 차르정부가 주력함대의 대부분을 극동에 배치한 정세 속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새로운 세력과 연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일본을 불신하게 된 슈펠트 제독과 러일 공조체제에 맞서기 위해 연대세력을 찾고 있던 북양총독 이홍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러시아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은 러일의 공조체제와 청국과 미국이 연대하는 새로운 판짜기를 요구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露日과 美淸간의 양대 세력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주변열강의 새로운 합종연횡의 시기가 도래했다. 청국은 한반도가 북경의 안위(安危)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sup>36)</sup>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마련에 부심했다. 따라서 슈펠트 제독이 해군장관에게 보낸 편지(1880.4.26.)에서 “여기서 내가 들은 정보로는 중국의 저명한 정치가가 조선에 외국 열강과의 입약을 권고했는데 아마도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 위협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은 “수교를 위한 교섭 개시의 호기일 수 있으나, 성공에 대한 낙관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sup>37)</sup>

러시아의 레쉴스키 함대가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북방세력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던 반면, 일본의 나가사키에 정착한 미국의 슈펠트 제독은 태평양 해양제국 건설의 화룡점정을 한반도에서 찍고자 했다. 따라서 북방의 대륙세력과 남방의 해양세력의 이해가 교차하고 충돌하게 될 한반도는 점차 운명의 갈림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36) 황준현의 朝鮮策略에 따르면, 청국과 조선의 관계는 “형세가 서로 접하여 신경(神京)을 겨안아 호위하는 것이 마치 왼팔과 같다(抑亦形勢昆連, 拱衛神京, 有如左臂)”. [金弘集 저, 金益洙 역, 『修信使日記, 朝鮮策略黃遵憲私撰』, (제주문화원: 1998), pp.188-204.]

37) NARA. RG 46. Record of The U.S. Senate 46th Congress: Shufeldt to Thomson, April 26, 1880.

미국이 러시아보다 먼저 움직였다. 슈펠트 제독이 고종에게 올린 서신(1880.5.4.)<sup>38)</sup>에서 조미수교가 조선에 가져다줄 가장 큰 혜택으로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조선은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인접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없는 반면 강력하게 무장된 국가”라는 점 둘째, 미국은 지리적으로 “서구열강 가운데 조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조미수교는 물질적으로 강성해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을 세계에서 외국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파악하고 있던 슈펠트는 미국이 침략을 통해 조선해역으로 주권을 확장시키거나 종교 혹은 독립 국가의 정치제도들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슈펠트는 고종에게 올린 편지의 말미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미국 시민이 해안에 표착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둘째, 국가간 상업상의 편의 제공이 그것이었다.<sup>39)</sup> 따라서 그는 조미수교시 “평화, 우정 그리고 우호적인 유대가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과 폐하의 왕국(조선) 사이에서 계속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러청간의 전쟁위기와 러시아의 한반도항구 점취(占取)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미수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슈펠트의 편지가 서울로 전달된다면, 고종정부의 근대적 개혁정책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었다.<sup>40)</sup>

38) NARA. RG 46. Letter of Shufeldt to the Korean King, May 4, 1880. 슈펠트는 고종에게 보낸 편지에서 과거의 오해(辛未洋擾 1871)로 인해 단절된 양국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편지를 쓰며 국왕이 수교를 통해 청국과 일본에게 부여한 상업적 특권을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이제부터 통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했다.

39) Letter of Shufeldt to the Korean King, May 4, 1880.

40) 슈펠트는 이노우에(井上馨) 일본 외무경의 소개장을 받아 1880년 5월 4일 부산에 이르렀다.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마스케(近藤真鋤)에게 조선 국왕에게 봉정하는 서신을 수교하여 서울에 전달하도록 부탁하였다. 곤도영사는 동래부사 沈東臣을

그러나 고종에게 올린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자 슈펠트의 실망감은 커져갔다. 그는 조미수교에 대한 낙관론이 퇴색하기 시작하자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찾았다. 무력시위였다. 슈펠트가 해군장관에게 보낸 편지(1880.5.29.)에서 강력한 함대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이와 관련 있었다.<sup>41)</sup>

슈펠트가 일본을 처음으로 개항시킴으로써 획득한 미국의 권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논리를 가다듬은 이유도 조미수교를 위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찾기 위함이었다. 후발국가인 미국은 유럽열강보다 먼저 조선을 선점해야만 미국의 통상에 유리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슈펠트는 고종정부가 미국과의 수교 제의를 거절한다면, 무력수단을 동원하여 조미수교를 강제해야 한다고 해군장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sup>42)</sup>

1880년의 한반도는 對淸전쟁에 대비하여 조선의 항구점령을 계획한 러시아와 남부해안의 전략거점을 무력 점거하려는 미국이 북과 남으로 조여 오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다. 슈펠트는 조선정부가 수교를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 호 사건의 탐문항행(1868) 과정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거문도(Port Hamilton)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계획의 골간은 고종정부가 합리적인 조건에 굴복할 때까지 거문도를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

방문했으나 후자는 서신 受諾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미국군함의 조속한 퇴거를 곤도영사에게 부탁했다. 李善珩, 『Shufeldt 제독과 1880년의 朝美交涉』, 『歷史學報』 제15집, 1961. pp.69-70.

41) NARA. RG 46. Record of The U.S. Senate 46th Congress: Letter of Shufeldt to the Thomson, May 29, 1880.

42) Letter of Shufeldt to the Thomson, May 29, 1880. 슈펠트는 조선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초점이 된 것은 러청전쟁 위기로 촉발된 러시아의 한반도 항구 점령 가능성과 청국이 그 대응책으로 조선과 서구 열강간의 입약을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조선 압박수단의 일환으로 거문도를 점령한다는 슈펠트의 구상은 아시아함대의 지휘권을 자신에게 이양해줄 것을 해군부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는 거문도의 점령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辛未洋擾를 경험했던 미국 해군부의 입장에서 거문도 점령을 위해 아시아함대를 동원한다는 계획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러청전쟁 위기와 관련하여 러시아 군함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모여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거문도 점령은 타 열강에게 조선의 항구점령 명분이 될 수 있었다. 미국의 아시아함대 사령관 토마스 패터슨(Thomas H. Patterson) 해군소장이 슈펠트에게 지휘권 이관을 거절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뒤를 이어 해군장관 톰슨은 슈펠트 제독에게 “조선인들과는 오직 설득의 수단만 사용할 뿐, 적대행위는 피하라”는 훈령을 발송(1880.6.30.)했다.<sup>43)</sup> 이제 조미수교는 조미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진화하고 있었다.

슈펠트제독과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과의 만남은 조미수교가 조선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반증했다. 해군장관의 훈령에 따라 재차 고종을 설득하는 편지를 쓴 슈펠트가 한문번역의 자문을 구한 이가 바로 이홍장의 심복 여경(余璦)이었다. 그는 나가사키(長崎)주재 청국 영사로 재직하면서 슈펠트와 이홍장을 연결하는 채널 역할을 맡았다. 1880년 8월 7일 여경이 슈펠트에게 전달한 것은 이홍장의 초청장이었다.<sup>44)</sup> 이홍장이 1880년 여름 슈펠트를 반드시 만났던 이유는 러시아 연합함대가 블라디보스톡 집결을 완료함으로써 對淸 해상압박 작전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43) Frederick C.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243-244. 슈펠트는 해군장관의 훈령을 접수한 다음날(1880.7.1.) 신중하게 훈령을 따를 것임을 회신했다.

44) Shufeldt to Secretary of the Navy, 13 Aug. 1880. LC. Shufeldt Papers.

슈펠트와 이홍장의 천진(天津) 회동이 열렸을(8.26.) 무렵, 러시아 연합함대 사령관 레습스키 제독은 이미 홍콩에 도착(8.14.)해 있었다.<sup>45)</sup> 러·청海戰에 대한 전망이 천진회동의 주요 의제로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홍장은 임박한 러·청海戰에 대한 슈펠트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했던 반면 슈펠트는 조미수교에 대한 청국의 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양자간의 합의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이홍장은 슈펠트를 자신이 신뢰하는 해군장교라고 추켜세운 후, “중국연안에서 러청간의 해전이 발발할 경우”, 그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알고자했다. 이홍장은 슈펠트의 의견을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답변을 재촉했다. 슈펠트가 미국해군장관에게 보낸 보고서(1880.8.30.)에 따르면,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결과는 단지 청국에 재앙(disaster)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sup>46)</sup>

슈펠트의 이같은 견해는 조미수교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개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홍장은 슈펠트와 국제적 시각에서 러청 전쟁위기에 대해 논의한 후, 러청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며 청국은 가능한 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포함한 청조정(淸朝廷)도 화평파(和平派)라고 덧붙인 이홍장은 마침내 고종정부가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에 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sup>47)</sup>

따라서 슈펠트 제독의 조미수교 시도는 러시아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을 계기로 이홍장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45) РГАВМФ. Ф.410. Оп.2. Д.4071. Л.359. 러시아 해군상 페슈로프(А.А.Пешуров)는 레습스키 제독에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승후(崇厚)가 8월 5일 석방되었음을 알려면서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타진하고 있었다.

46) Shufeldt to Secretary of the Navy, 30 Aug. 1880. LC. Shufeldt Papers.; Paul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p.481-482.

47) 위의 문서.

되었다.<sup>48)</sup> “동방에서의 조선과 미국의 이해(Corea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East)”라는 제목의 해군장관에게 올린 보고서는 귀국길에 오른 슈펠트가 고베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여정에서 작성(10.13.)되었다.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미국의 임무와 역할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슈펠트는 미국의 미래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확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유럽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을 통상권역으로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며, 둘째, 이주와 통상의 물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 50년 이내에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더 큰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슈펠트의 “아시아중시론”에서 조미수교가 조선에게 안보상의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고종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미수교의 당위성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다. 왜냐하면 슈펠트는 조선이 장차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쟁에서 “전장(Battle ground)”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sup>49)</sup>

이 보고서에서 슈펠트는 1880년 조선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조미수교가 성사되지 못한 원인을 조선 보다는 일본에게서 찾고 있었다. 조선 측의 수교거부 의사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과연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했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다. 슈펠트의 대일 불신의 원인은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킨 목적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대외통상 독점이 그 목적이며 무방비 상태의 이웃국

48) Shufeldt to Secretary of the Navy, 30 Aug. 1880. LC. Shufeldt Papers.

49) "Corea and American Interests in the East". 13 oct. 1880. LC. Shufeldt Papers.

가(朝鮮)를 가혹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했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동시에 조선인들을 “철 채찍(iron rod)”으로 지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sup>50)</sup> 따라서 향후 슈펠트의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히 배제된 것도 이같은 그의 일본관에서 비롯되었다.

슈펠트는 하와이를 거쳐 1880년 11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1880년 미국해군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슈펠트 제독이 지휘한 ‘타이콘데로가’號는 약 2년 동안 라이베리아, 걸프 만 등을 거쳐 홍콩, 조선에 이르기까지 36,000마일을 항행했다. 해군장관은 이를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금맥을 미국에게 열어 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에 톰슨 제독은 대서양 보다 유럽열강과 경쟁에서 지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태평양에서 통상의 장점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슈펠트의 주장을 반복했다. 심지어 조선에서도 미국의 공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영국의 그것보다 높지만, 영국은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일본을 통해 자국 상품의 조선 수출 길을 찾아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톰슨 해군장관은 만일 조미수교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sup>51)</sup>

50) 위의 문서.

51)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30 Nov. 1880. 46th Congress 3 session, pp.27-29.

#### 4. 슈펠트-이홍장의 조미수교 교섭과 “중국인 배척법”

슈펠트와 이홍장의 天津 회동 결과를 반영한 황준헌의 “朝鮮策略”은 고종정부가 조미수교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이 러시아 레쉴스키 함대의 극동내도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에 파견(1880.8.11.)했던 김홍집이 귀국 후, 국왕에게 올린 “朝鮮策略”은 사실상 근대 조선의 안전보장책이었다. 고종은 3중구조의 다층적 안보책략(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가운데 미국과의 수교 즉 聯美策을 가장 실효적인 防俄策으로 보았다.

이에 고종이 “미국은 원수 나라가 아니라(米利堅烏可謂讎國?)”고 정의함으로써 조미수교 준비를 위한 논리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하나는 신미양요(1871)와 제너럴셔먼호(1867) 사건과 같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해원(解冤)의 논리였고 다른 하나는 척사파(斥邪派)를 설득하여 미국을 포함한 서구열강을 조선의 대외정책으로 포섭할 개방(開放)의 논리였다.

해원의 논리와 관련하여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은 신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은 미국보다는 조선 측에서 사단(事端)을 제공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는 본래 恩怨관계가 없었음에도 발생한 강화(江華)와 평양(平壤)에서의 싸움은 당초 조선의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이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인바, 우리나라 스스로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영의정은 “서양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 사는데도 중원 사람들이 모두 邪學을 한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척사파를 반박함으로써 미국을 수용하기 위한 논거를 갖출 수 있었다.<sup>52)</sup> 따라서 1880년 11월 고종이 역관 李容肅을 청국으로 파견한 것은 대미수교 방침을 통고하기 위함이었다. 동시

52)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9月 8日.

에 국왕은 탁정식(卓挺植)을 주일청국공관으로 보내 “국가안보의 좋은 계책(保國良策)”인 연미책을 신속히 성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sup>53)</sup>

그럼에도 청정부는 조미수교를 성사시킬 방식을 두고 혼선에 빠져있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 혹은 러시아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열강과의 입약을 권고해왔음에도 수교를 통해 청국의 원팔과 같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으로 분리되는 상황은 청국의 위신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일청국공사 何如璋이 건의한 『主待朝鮮外交議』는 국익과 위신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제안이었지만 모순적이었다. 종래의 대조선 불간섭정책과 “속방조관”은 양립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홍장은 “속방조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1880.12.23.)에서 조미조약에 조선은 “중국의 명을 받들어 結約”한다고 聲明하도록 해야 한다는 何如璋의 건의에 대해 다음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첫째, 조약에 속국의 명문화는 조선국왕 스스로 상주하여 간청해야 가능하다. 둘째, 조선이 일본과 조약체결 당시 조약문에 중국정부의 명을 받든다는 문구가 없었다. 셋째, 조선이 서양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중국정부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必奉我政府之命)”라고 한다면, 조선은 따르겠지만 서양국가는 기꺼이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sup>54)</sup> 따라서 1880년 12월의 이홍장은 조미수교에 기존의 불간섭(不干涉)정책을 유지하고자 했다.<sup>55)</sup>

53)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pp.115-122. 「朝鮮密探委員卓挺植來稟」

54)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pp.109-114. 李鴻章-總理衙門(1880.12.23.)

55)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 아니고 독립국이라는 사실은 청 당국이 미국에 이미 두 차례 인정한바 있었다. 청국은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1866)의 배상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요구 뿐만아니라 신미양요(1871)와 관련된 주청미국 공사 로우(F.F.Low)가 조선원정 이유서를 총리아문을 통해 조선에 전달하고자 하

이홍장의 이같은 입장은伊犁문제로 야기된 러청전쟁 위기가 해소됨으로써 러시아의 조선침략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러청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급파(1880.7.23.)된 청측 협상대표 증기택(曾紀澤)이伊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정의 최종안을 조율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881년 2월 러청간의 서부국경을 획정하고 국경통상을 규정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협정을 체결한 청정부는伊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전쟁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sup>56)</sup>

그렇다면 1880년 겨울 “속방조관”에 반대했던 이홍장이 1882년 봄 슈펠트와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에 착수했을 때, 이전의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는 “속방조관”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교협상의 핵심쟁점으로 삼았을까? 이는 “러시아공포증(Russophobia)”의 재부상과 관련 있었다. 러청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1881.2.24.)은伊犁위기만을 해소했을 뿐, 러시아는 레습스키 함대의 극동원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동아시아진출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恐露症”이 재등장함으로써 이홍장은 청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선의 보호에 미국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러시아공포증”의 실체는 차르의 칙령에 따라 러시아의 새로운 해군전략 수립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특별회의(1881.9.3.)와 관련이 깊다. 회의에서는 강력한 해군 건설의지를

있을 때, 총리아문은 조선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표명하바 있었다. 조선이 비록 청의 조공국이지만 사실상 독립국이므로 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對朝鮮 不干涉政策이 그 명분이었다. 金源模,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交涉始末(1882)」, 『國史館論叢』 第44輯, 1993. pp.146-147.

56) 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러시아 레습스키함대의 극동원정을 중심으로」, 2018, pp.285-294.

보인 알렉산드르 III세의 구상에 따라 黑海함대의 부활과 발트함대의 증강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레솅스키 제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제출한 정책건의서(1881.9.4.)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중국위협론’이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재정문제와 정치 불안으로 함대증강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는 반면 청국은 모든 정파가 유럽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독자적 행보를 위한 군비지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1881년 11월부터 특별회의에서 결의된 해군전략과 레솅스키 제독의 정책건의서에 부합하는 세부실천 계획이 러시아 해군성에서 수립되었다.

러시아 해군력 강화를 위한 건함20개년계획(1881~1901)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요새화 계획은 차르정부의 국책과제가 되었다. 유럽의 최신 군함 건조 과정을 견학하여 이를 건함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임무는 차기 해군상 후보였던 쉘스타코프(И.А.Шестаков) 제독이 맡았다(1881.11.16.).<sup>57)</sup> 특히 동아시아에서 유럽열강의 무역 통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태평양의 유일한 항구로서 전시에 러시아 함대기지 역할을 하게 될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188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논의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러시아로 연결할 교통로 개설 문제였다.<sup>58)</sup>

57) 쉘스타코프 제독(1820-1888)은 러시아 해군성 건함국 기술분과위원장의 자격(1886. 11. 16. - 1882. 1. 11.)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조선소를 방문한 후, 1882년 해군상에 임명되었다. 그는 1886년 극동시찰 과정에서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거문도에 기항하여 현지상황을 살폈고 영흥만을 비롯한 한반도 해안을 탐사한 후, 한반도에서의 부동항 획득문제에 대한 상주서를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음 논문 참조 최덕규, 「러시아 해군상 쉘스타코프와 거문도사건(1885-1887)」,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37호, 2015.

58) РВКндрено Мржи Пмиа Роси 80-х Годв ХХ вв, СПб 2006, pp.58; 75-78.

차르정부의 동아시아진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자, 이홍장이 재차 주목한 것이 聯美策이었다. 그는 조미수교를 위해 전권을 위임 받은 슈펠트로부터 조선의 보호를 위한 문서상의 약속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속방조관”이었다. 1882년 2월 15일 그는 황준헌이 작성한 조미조약 초안 제1조의 “중국정부의 명을 받들어”라는 어구에 金允植이 난색을 표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미국까지 중국의 명을 받들어야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슈펠트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윤식이 지적하였음에도 결국 그를 강압하여 “속방조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sup>59)</sup> 요컨대 이홍장에게 “속방조관”은 조미수교의 본령이었다.

반면 슈펠트가 조미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한 카드는 무엇이였을까? 그는 1881년 6월 上海에 도착했음에도 이후 조선측 인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었다. 그가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1882.3.15.)에 착수할 때까지 천진에 머물렀던 시기는 한편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조선정책의 原型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 원형이란 청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조미수교를 성사시키는 전략이었다. 슈펠트가 꺼내든 가공할 위력의 대청 압박 카드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의 제정이었다. 이 법은 미국 의회 역사상 특정 국가 노동자들의 미국 이민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최초의 법안이 되었다. 1882년 3월 23일 미국 의회에 제출된 중국인 배척법 1차 법안은 향후 20년간 중국인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를 배척하는 동시에 중국인들이 미국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권리 제한을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이 법안은 아서(Chester A. Arthur)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미국의회는

59) 김원모,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 交渉始末(1882)」, 『역사관논총』 (44), 1993. p.136.

이를 보완하여 재상정하면서 입법화 과정에 들어섰다.

미국하원은 1882년 4월 17일 새롭게 보완한 중국인 배척법안(New Chinese Exclusion bill)을 통과(찬성 167: 반대 66)시켰다.<sup>60)</sup> 수정법안의 요지는 중국인 노동자의 중국 입국 금지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키고,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출국 시, 미국에 재입국을 원한다면 왕복증명서를 받도록 했고, 중국인의 미국 국적 취득을 불허하는데 있었다.<sup>61)</sup> 제1차 법안이 거부된바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국인 배척법 역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sup>62)</sup> 결국 아서 대통령은 마침내 5월 6일 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당초 10년 기한의 한시법이었으나 이후 갱신되어 1965년까지 약 80여 년 간 중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sup>63)</sup>

이러한 인종차별적이고 중국혐오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중국인 배척법이 미국의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했던 인물이 슈펠트 제독의 지인이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사젠트였다.<sup>64)</sup> 슈펠트와

60)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Immigrants & Minorities*, 20:2,(2001) pp.68-69.

61) H.Res. 683 (112th): Expressing the regre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the passage of laws that adversely affected the Chines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Chinese Exclusion Act.(Jun. 18. 2012)

62) Helena Weekly Herald. May 4, 1882. "The Chinese Bill. Probable Adoption by the House of the Senate Amendments."

63) Sang Hea Kil, "Fearing yellow, imagining white: media analysis of the Chinese excursion Act of 1882", *Social Identities*, Vol. 18, No. 6, 2012, pp. 663-664. 이 법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됨으로써 1943년에 폐지되었으나, 법적으로 인종적 제한이 철폐되는 1965년까지 중국인 이주는 재개되지 못했다.

64) 슈펠트와 사젠트의 공조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바로 미국 서부에서 확산되고 있던 反中 정서였다. 반중국 캠페인이 미국에서 본격화되었던 계기는 중국인 저임 노동자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짐으로써 발생한 1877년 샌프란시스코 폭동사태였다. 1877년 7월 23일 저녁 미국 노동당 샌프란시스코 중앙위원회(The San Francisco central committee of Workingmen's Party of the US)

이홍장의 조미수교를 위한 협상이 천진에서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중국인 노동자를 특정한 배척법이 통과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슈펠트의 협상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사젠트 의원이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문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노동계의 反中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중국인의 이주를 "침략"으로 표현하며 언론과 법조계를 제외한 전 영역에 중국인들이 침략하였고(The Chinese invaded) 그 결과 "미국 노동자들은 기아선상을 헤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내 중국혐오 정서는 18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득표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더욱 확산되어 갔다.<sup>65)</sup>

이러한 반중정서가 "중국인 배척법"으로 법제화되는 주요 계기가 바로 슈펠트가 사젠트에게 보낸 공개편지(1882.1.1.)였다. 이 편지는 슈펠트가 6개월간 천진에 머물면서 중국인을 관찰한 기록으로서 미국의 중국이주민 정책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슈펠트가 "공개 편지(open letter)"라고 지칭한 까닭은 언론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슈펠트의 편지는 사젠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불레틴(San Francisco Bulletin)"에 공개되었고, 이후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슈펠트의 편지를 "중국인을 위한 중국(China for Chinese)"라는 제하로 기사화(1882.3.30.)<sup>66)</sup>함으로써 미국 내 중국혐오 정서에 방아쇠를 당겼다.

---

가 시청 맞은편 공터에서 철도노동자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군중집회를 개최했을 당시, "안티쿨리클럽(Anti-Coolie Club)" 회원들이 인근의 차이나타운을 습격하여 샌프란시스코는 3일간 방화와 약탈의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pp.58-59.

65)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pp.62-63.

66) The New York Times, March 30, 1882, "China for Chinese. Results of

슈펠트는 편지의 도입부에서 중국인들의 모든 행동은 기만과 위선이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는 그가 조미수교 준비를 위해 이홍장을 비롯한 중국의 지배층과 교섭을 통해 취득한 결과였다. 그는 중국인의 이같은 행동은 그들의 세계관이었던 화이관(華夷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화이관의 시각에서 청국은 문명인이고 서양은 오랑캐였기 때문이었다. 슈펠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근대 문명의 담지자인 서구인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인들에게는 동정과 자비보다는 무력으로 대해야만 하고 무자비가 정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일 경우,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려는 허약함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슈펠트는 중국인들이 자존심에 집착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대할 경우, 이를 기화로 외국인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파악했다.

슈펠트는 편지에서 미청관계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적대적 정치체제를 꼽았다. 그는 중국 관리들이 미국식 자유주의가 청제국에 도입된다면, 이는 천자(Heaven-born)시대의 종언뿐만 아니라 전제 체제에서 배를 불렀던 관료제도의 종결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았다. 슈펠트는 미국에 유학중인 중국학생들이 중도에 소환되어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의 화신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청국 관료들의 반미성향의 결과로 파악했다. 결국 슈펠트에게 청국은 미국의 미래와 운명처럼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매우 적대적인 이중적 의미를 지닌 나라였다.<sup>67)</sup>

슈펠트의 이 같은 중국관은 미국인과 중국인의 차이점을 부각시

---

Commodore Shufeldt's Observations. Deceitful Bearing toward All Foreigners - Character of Li Hung Chang and His Aims - Why Chinese Immigration is not Desirable".

67) The New York Times, March 30, 1882.

김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논거가 되었다. 이는 백인이 선과 正義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중국인은 사악(evil)과 不義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기독교 중심의 백인사회에서 사악과 불의한 존재는 공존할 수 없는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슈펠트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무제한적인 미국 이주와 관련하여, 미국의 노동력 수요에 공급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사젠트에게 제안했던 것이다.<sup>68)</sup>

슈펠트의 편지가 사젠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블레틴”에 게재된 시기는 1882년 3월 20일 이었다. 이는 슈펠트와 이홍장이 조미수호 조약 체결을 위한 첫 교섭에 착수(3.25.)하기 5일 전이었다. 천진 北洋衙門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약체결 협상을 위임한 고종의 封書(1882.1.14.)를 소지한 이홍장이 조선의 전권으로 나섬에 따라<sup>69)</sup>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美淸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견되었다.

슈펠트와 이홍장의 협상의 쟁점은 조선의 지위를 결정짓는 문제였다. 회담에 임하면서 이홍장의 관심사는 조약문에 이른바 “속방조관(屬邦條款)”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이홍장은 조미조약을 미국과 이후 서구열강이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합법적인 문서로 삼고자 했다. 이는 조선을 독점하기 위해 조미수교 주선에 주저했던 일본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미수교 과정은 조선의 독점을 위한 청일간의 경쟁구도를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했다.

---

68) 슈펠트가 건의한 중국인 이주 제한법은 그 범위를 캘리포니아에 국한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가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이주 전면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가 샌드위치 섬(Sandwich Island)이었다. 이곳은 미국의 육군과 해군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중요한 곳이었음에도 이 섬의 중국인 비중이 적정선을 넘고 있었다.(The New York Times, March 30, 1882.)

69) 송병기, 「김윤식(金允植) 이홍장(李鴻章)의 보정(保定) 천진회담(天津會談) (상) - 조미조약(朝美條約) 체결(1882)을 위한 조정교섭」, 『동방학지』 44권, 1984. pp.187-189.

반면 슈펠트가 주청미국공사 홀콤과 함께 작성한 조약 초안에는 “속방조관”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이홍장의 처신에 대해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는 청국의 反外勢적 입장이 청의 군사적 약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슈펠트는 조약 제1조에 “속방조관”을 포함시키자는 이홍장의 제안을 일축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슈펠트가 조약 제1조에 “속방조관”의 삽입 불가 입장을 견지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속방조관”은 조선과 미국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며 둘째, 조선을 자주국으로 이미 인정했던 조일수호조규라는 선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홍장이 “속방조관”은 고종의 의사를 물어 조선에서 삽입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슈펠트는 이를 거부했다. “속방조관” 수용 불가가 그의 지론이었다.<sup>70)</sup>

슈펠트가 “속방조관”을 용납하지 않은 이유는 청국이 조선의 중주국임을 인정할 경우, 조선은 美淸의 공동보호국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양국간의 정치적 동맹의 단초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동맹은 미국내의 반중정서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슈펠트에게 부여된 권한 밖의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조약문의 최종안에는 “속방조관”이 생략되었다. “恐露症”이 재림한 상황에서 슈펠트와 이홍장의 교섭은 전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었다.

슈펠트가 之罘에서 제물포로 출발(1882.5.8.)한 것은 조미조약 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이날은 워싱턴에서 아서 대통령이 중국인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10년간 금지하는 “중국인 배척법”에서명(5.6.)한 직후였다. 슈펠트가 조선으로 출발한 다음날(5.9.) 上海에서 발행되는 “노스 차이나 데일리뉴스(North China Daily

70) Frederick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289-295.

News)”가 사젠트에게 보낸 슈펠트의 편지를 공개한 것은 조미수교와 중국인배척법의 상관성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슈펠트는 미국의 反淸정서를 배경으로 청정부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는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이 되어야지만, 조선의 시장에서 모든 국가들의 기회균등 원칙이 보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슈펠트는 조미조약 체결(5.22.)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1882.7.29.). 미국에서는 조미수교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前 상원의원 사젠트에게 보낸 공개편지 때문에 그가 소환되었으며, 이 편지는 의회에 상정된 “중국인배척법” 통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편지는 편향되지 않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경우, “존경할만한 문서”이나 동시에 외국에서 準외교관의 임무를 수행했던 미국정부 장교의 편지로서는 “끔찍할 만큼 경솔하고 무분별”했다는 편집자의 평가를 덧붙였다.<sup>71)</sup>

반면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슈펠트의 편지에 대해 다른 평가를 했다. 슈펠트를 “賢人(great sagacity)”으로 칭송한 전직 해군장관 톰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1882.7.18.)했다. 톰슨은 슈펠트가 해군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던 사젠트가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2)</sup> 결국 슈펠트는 조미조약에서 “속방조관”을 삭제하기 위해 청정부를 압박했던 책략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나, 곧 해군 자문위원단 단장에 임명됨(1882.8.5.)으로써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71) New York Times, July 4 & 6, 1882.

72) Frederick Drake, The Empire of the Seas, pp.307.

자문위원단은 “백색함대(White Squadron)”로 명명된 미국 최초의 철제 함대 건조를 심의, 감독하는 기구였다. 그 수장으로 해군 확장론자였던 슈펠트가 적격이었다. 그는 아프리카·아시아 순항과 청국 체류를 통하여 유럽열강의 강력한 해군력을 경험했고 성장하는 일본해군에 의해 극동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의 목제 군함시대가 종식된 것도 그의 강력한 해군건설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조미수교 직후 슈펠트는 목선시대에 머물고 있었던 미국해군을 철선시대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슈펠트가 주력했던 신예해군(A New Navy)의 건설은 1883년 3월 3일 미국의회가 철제군함 건조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는 미국을 태평양의 해양제국으로 부상시키고자 했던 슈펠트의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는 첫걸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개월 뒤 초대 조선주재 미국공사 푸트(Luicius Foot)가 서울에 도착(1883.5.17.)함으로써 조선정부와 미국상원의 비준을 받은 조미조약의 비준서 교환(5.19.)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슈펠트가 미국의 아시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의미를 부여했던 조선에서의 문호 개방(Open door)이 성사된 것이었다.

## 5. 결 론

동아시아 국제관계(1880~1882)의 시각에서 살펴본 미국 해군 제독 슈펠트와 조미수교에 대한 결론은 1) 조미수교의 평가와 2) 그 영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특징은 조약 제1조에 "거중조정(good offices)"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하기로 명시함으로써 조선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무가 명문화되었다. 이는 페리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킨 美日和親條約(1854)에는 없는 조문이었다. 이 조문에 따라 미국은 조선이 불공정한 모멸을 당할 경우相助의 조약 의무를 지게 될 것이었다.

주청미국공사 영(J.R.Young)은 국무장관에게 슈펠트의 활동에 대해 보고(1882.5.1.)하면서 조미수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선과의 통상 조약은 값진 것이다. 아울러 '거중조정(good offices)'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청국에 의해 '독립국' 혹은 속국의 위치에 놓이게 될, 조선을 보호하는데 쓰일 것이다."<sup>73)</sup>

슈펠트 제독이 성사시킨 조미수교는 미일수교(1854)와 필리핀 점령(1898)과 더불어 미국이 태평양의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미국 해군사에서 슈펠트가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M.C.Perry)제독과 필리핀 점령을 적극 지지한 마한(Alfred T. Mahan)제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의 번영이 해외통상에 달려있다는 신념에 따라 해군의 임무는 연안 방위보다 대외무역 보호와 확장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보았다.<sup>74)</sup> 조미수교가 외교 관료가 아닌 미국정부의

73) 『近代韓國外交文書』 제4권, pp.273-275. J.R.Young(1882.5.1.)-T.F. Frelinghuysen.

전권을 부여받은 해군 제독에 의해 성사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 확대는 미국 해군의 동반성장과 궤를 같이하게 되었다.

슈펠트는 조미수교를 위한 교섭에서 무력과 압박의 방식으로 비문명인들을 다뤄야한다는 그의 경험칙에 의존하였다. 인종주의적 문명론자이며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슈펠트에게 이홍장은 기독교적 정의에 대립되는 불의와 사악의 전형이었고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배척되어야 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는 조미조약 체결과정과 “중국인 배척법”의 미국의회 통과과정이 겹쳐지는 이유이기도 했다.

조미수교 이후 조선은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겪게 되었다. 국제공법의 관점에서 볼 경우 조선은 독립국이었지만, 중국적 세계질서의 시각에서 볼 경우 속국이었던 때문이었다. 따라서 근대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조선에 대한 美·淸간의 패권경쟁과 연동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의 지위를 둘러싼 미청 경쟁은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면서 청국에게 불리하게 마무리되었다. 미국은 청일전쟁(1894~1895)을 계기로 조선의 속국 지위를 부정했던 일본을 지지하는 동아시아 정책을 본격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군이 평양전투 이후 압록강을 건너 청국으로 진격하자, 청정부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1894.10.31.)했음에도, 미국이 이를 거절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駐淸미국공사 덴비(Charles Denby)는 청일전쟁이 확산되는 과정에 개입하기보다 청정부가 붕괴직전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중재

---

74) United States Congressional Serial Set, Board of Assistants for the Navy, Navy Department, March 27, 1878. pp.32-34.

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미국무장관 (W.Q.Gresham)에게 보고했다. 이는 중국이 무력의 이외의 방식으로 결코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주청공사 덴비의 신념이기도 했다.<sup>75)</sup> 이는 상술한 슈펠트의 경험을 계승한 측면이 강했다.

덴비는 청국의 대조선 중주권 유지정책을 개전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청정부가 일본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조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청정부의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이 미국의 중재를 의뢰하기 위해 덴비를 방문했을 때, 후자가 요구한 것이 바로 조선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서면보장(Put in Writing)이었다. 요컨대 청국이 조선에 대한 중주권 포기를 선언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이 청일전쟁에서 거중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sup>76)</sup>

결국 슈펠트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간주하였던 조선은 조미 조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 기회 균등한 통상시장으로 변모해갔다. 이는 조선의 사례가 청일전쟁 이후 청국에도 적용 가능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1899년 9월 6일, 미국무장관 존 헤이(John Hay)가 주요 강대국(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각서를 보내, 중국의 영토보전과 상공업상의 기회균등을 요구한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역시 슈펠트의 조미수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75) "Mr. Denby to Mr. Gresham, October 23, 1894," in American Diplomatic and Public Paper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eries III, The Sino-Japanese War to the Russo-Japanese War 1894-1905, vol. 2, The Sino-Japanese War I, pp.254-259.

76) "Mr. Denby to Mr. Gresham, October 31, 1894," in American Diplomatic and Public Papers, pp.279-282.

(원고투고일 : 2020. 3. 31, 심사수정일 : 2020. 5. 13, 게재확정일 : 2020. 5. 18.)

주제어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슈펠트 제독, 조선 국왕 고종, 러시아  
레솅스키 함대, 러청전쟁위기.

## <참고문헌>

### 1. 자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동북아역사재단 2016.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近代韓國外交文書』 제4권, 동북아역사재단, 2012.

金弘集 著, 金益洙 譯, 『修信使日記, 朝鮮策略黃遵憲私撰』, 제주문화원, 1998.

Library of Congress, Shufeldt Papers.

NARA. RG 46. Record of The U.S. Senate 46th Congress.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FRUS). 1870; 1874,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РГАВМФ) Ф. 410 Ф.536

### 2. 논문 및 저서

김원모, 「슈펠트·李鴻章의 朝鮮開港 交渉始末(1882)」, 『국사관논총』 (44), 1993.

김용구, 『약탈제국주의와 한반도: 세계외교사 흐름 속의 병인 신미양요』, 도서출판 원, 2013. UCI : G701:B-00109150635

박일근, 「韓美修好條約에서 본 美中の 對韓外交政策 - 高宗의 秘密外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11, 1977.

송병기, 「김윤식(金允植) 이홍장(李鴻章)의 보정(保定) 천진회담(天津會談)(상, 하) - 조미조약(朝美條約) 체결(1882)을 위한 조청교섭」, 『동방학지』 44-45권, 1984.

李普珩, 「Shufeldt 제독과 1880년의 朝美交渉」, 『歷史學報』 제 15집, 1961.

정민경, 이근욱, 「미국과 영국의 대조선 수호조약 교섭 과정 연구:

외교문서에 기초하여」, 『동아연구』 61권, 2011.

DOI : 10.33334/sieas.2011.30.2.103

- Dennett Tyler, *Americans in Eastern Asia*. New York, 1922.
- Drake, Frederick C. *The Empire of the Seas: A Biography of Rear Admiral Robert Wilson Shufeldt, US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4.
- Hsu Immanuel.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Patrick Fisher & Shane Fisher,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Immigrants & Minorities*, 20:2,(2001)
- Paullin, C.Oscar.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XXV. No. 3. 1910.
- Robert Seager II, "Ten Years Before Mahan: The Unofficial Case for the New Navy, 1880-1890", *The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Review*, Vol. 40. No. 3, 1953.
- Sang Hea Kil, "Fearing yellow, imagining white: media analysis of the Chinese excursion Act of 1882", *Social Identities*, Vol. 18, No. 6, 2012,
- Кондратенко Р.В. М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80-х Годов XIX века, СПб. 2006,
- Воскресенский А.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г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Договора 1881 года, М., 1995.

(Abstract)

U.S. Navy Commodore Shufeldt and the Establishing  
Joseon(former Korea)-U.S. diplomatic Relations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Choi, Deok-kyoo

The key point of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Joseon-United States Treaty (1882) was whether or not to insert the article for dependency of Korea on Qing dynasty. Commodore Shufeldt, the U.S. representative granted full authority from the US government, thwarted the attempt of the China to specify it for the reason of hindering the signing of a treaty on terms of equality and courtesy between Joseon and the United States. Thus, the treaty became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Korea in its history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country politically, and open market where would not allow monopolies and privileges by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to certain countries economically. As a result, Shufeldt was able to put into practice his belief that America's prosperity depended on trade with Asian countries.

Li Hung-chang's idea of "dependency article" was to recruit the United States as a country that jointly protects Korea along with the Qing Dynasty. In the critical situations with Ryukyu annexation (1879) by Japan and the appearance of Russian fleet led by Admiral Lesovsky into the China sea, Li Hung-chang formed a scheme to cooperate with the U.S. in defense against Russia and Japan which led to the Russo-Chinese War crisis. Thus, if Shufeldt agreed to the "dependency article," Li wanted to seek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S. based on the traditional Korea-Chinese relationship.

In response, Establishing of Joseon(Korea)-U.S. diplomatic relations presented a broad spectrum of Korea's future status. While Korea, being

on terms of equality with the U.S., wanted to move away from its traditional dependency status on the Qing Dynasty and become an independent country, the China tried to strengthen its tributary relations with Korea. As a result, Korea's international status became a pendulum movement between independent and subordinate countries, linking it to the hegemonic rivalry between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Korea-United States Treaty of 1882, Commodore Shufeldt, Korean King Gojong, Russian Fleet of Admiral Lesovskii, Russo-Chinese War Crisis.

